

특집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

〈5〉 특수도서관

육근해*



한국도서관 기준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1년 초판이 나온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하리만큼 현대사회는 매 해마다 환경과 기술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에 기준 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21세기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 기준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2003년판 개정에서는 특수도서관의 기준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핵심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분리 기준 설정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근무·복역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일반인과 동등하게 자료이용 및 정보접근의 환경을 제공하고, 여가 및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여기서 장애인 또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봉사하는 도서관으로서의 특수도서관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1987년 이전까지는 전문도서관의 유형을 특수도서관이라 칭하였었고, 1987년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이나 신체장애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특수도서관 관종의 모태가 되었다. 즉, 1981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서의 특수도서관은 현행 전문도서관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를 2003년판 한국도서관 기준에서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분리, 기준을 정함으로 특수도서관의 확고한 자리매김이

* 한국첨자도서관 사무국장, youk@kbli.or.kr

되었다.

둘째 점자도서관의 기준 개정

장애인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도서관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설치를 규정하고 그 시설기준을 명시한 바 있었지만 1981에 발간된 한국도서관 기준에는 점자도서관 분야는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은 1977년에 처음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되었던 그 기준을 그대로 규정한 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왔다. 이에 25년동안 정체되어 있던 도서관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춘 도서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서관의 최소 면적이 66㎡을 330㎡로 상향 조정하였다. 66㎡의 규모는 문과 수준의 공간으로 도서관이라 칭하기에 턱마니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장비도 점자출력기 및 토킹북 플레이어, 독서확대기 등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였다.

자료형태 및 양에 있어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전자도서와 디지털 토킹북, 디지털점자도서 등과 대형 활자자료, 촉각자료 등 새로운 자료의 형태가 추가되었고, 기본 장서 수도 점자도서 1,500점과 녹음도서 500점이었던 이전에 비해 총 자료가 3,000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총 자료 3,000종이라는 것은 한 종당 점자도서는 평균 3권, 아날로그 카세트 테이프는 8개 정도이므로 최소한 10,000점 이상이 된다.

특히 그동안 특수도서관 분야에서 이용자봉사와 평가를 다루지 않았던 것을 규정하였다. 이용자봉사에 있어서도 우편을 통한 열람봉사 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열람 봉사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병원 · 병영 · 교도소 도서관의 신설 개정

병원 · 병영 · 교도소 도서관의 기준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런 종류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연구도 부족하고 정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으며, 사회의 관심도 아직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기준이 제정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다.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향 조정인지 하향 조정인지 조차도 언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도서관 기준이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하여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기준이 없으므로 해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설립을 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목표가 없이 표류하였던 것을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공공을 비롯한 타 관종의 도서관은 1981년판 도서관 기준과 비교하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특수도서관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무한 기준을 새로이 신설한 것이다. 이번 병원 · 병영 · 교도소 도서관 기준의 신설에 가장 큰 의의는 도서관 운영자나 관계 공무원, 이용자들 간의 분분했던 이견(異見)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 확실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서관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 도서관 기준은 처음 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특수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수시로 도서관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도서관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